

# 공 고

#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18 - 6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17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###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 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## 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, 제76조

#### 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## 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7, 8139, 8142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## 대상자 명단

※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

※ 관련문서 : 방송통신사무소-92(2018.10.22., 불법스팸 과태료 집행위탁 건 처리)

※ 건명 : 과태료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

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)

(단위: 원)

No.	과태료 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0178180004530011857	김*진	890924-*****	3,862,500	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1길5-9, 3동 205호(마전동)
2	0178180004530011861	주식회사 해*로	134511-*****	3,862,500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161 번길 5(매산리, 물류창고)